

유의사항

□ 도면승인 신청

- 건조검사, 별도건조검사, 정기검사, 중간검사, 특별검사, 임시검사 및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어선의 도면에 대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(「어선법」 제41조제1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을 말합니다)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
처리절차

